

著作権法 과 建築士

崔 昌 奎

著作権法은 約20年前 부터 있었는데 이法은 日帝時代 부터 있었던것을 그대로 韓譯해서 制定되어 있었으나, 이法에 保護를 받아야 할 対象인 文化藝術人을 비롯해서 出版, 音盤, 放送等 分野에서 創作物의 著作権을 保護해 주는 또는 出版權이나 複製權의 限界等を 規定해 주고 많은 罰則도 具備되어있는 現行法이 있다는 것을 周知 못하고 있었던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이法の 母體였던 日本의 著作権法은 거의 每年 改正되어서 15회나 改正되어 現在 日本에서는 施行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現社會의 實情과 藝術界의 分化나 多樣化 또는 새로이 이런 分野로 介入된(機械와 科學文明으로 因해) 많은 “메스메디어”와 簡易화된 傳達과 使用面의 擴大로 도저히 現行法으로서는 堪當할수 없게되어 文公部側이나 文芸振興院, 芸總을 爲始해서 出版協會, 官民放送界에서도 混亂이 일어나 改正을 서둘르게 되었다.

旧曆(76년12월) 이法の 改正을 前提로한 “세미나” “심포지움”이 있어 建築家協會側으로서 參席을 해보고는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다.

現行 著作権法이 얼마나 엉성하고 未備함을 새삼 느끼고 너무도 많은 分野의 特殊한 立場과 事情을 듣고보니 여간 어려운것이 아니거나 하는 點에서 모두가 緊張해서 拙速을 避하고 慎重을 期해서 充分한 研究檢討 한 다음 建議하기로 했다.

76. 1. 20日 韓國著作権法研究所가 當時 理事陣과 諮問委員合同懇談會가 있어 偶然히 建築界에서 筆者가 委員에 依賴를 받았기에 承諾하고 參席키로했다.

事實은 昨年 이法에 關한 몇개의 會議에 參席해 보았기에 若干은 現在까지의 經緯와 內容을 알고는 있었다.

허나 막상 諮問委員으로 이 問題에 發言을 할수 있다고보니(얼마만큼 反映이 될지는 몰라도) 문득 生覺나는 點이 있었다.

그것은 過去 行政府나 機關이나 民間團體에서 建築에 關한 諮問委員으로 많은 建築人이 參與는했다.

그러나 어떤사람이 무슨諮問이 되어서 어떤 發言이나 建議에 作用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것은 個人資格으로 委員依賴를 받았어도 그 結果가 建築全般에 影響을 주는것은 틀림없다. 이것은 特히 法制定이나 改正에 關한 일이면 더욱 그러하다. 제 아무리 個人資格으로라고는 해도 自己의 權威나 立場이나 또는 自己個人에 有利한 發言을 했다고 해도 할말은 없지만 그結果가 全建築界에 關連된다는지 몇몇 個人이 아니고 建築界 3團體에 큰 影響을 미치는 것이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意識적으로 秘密에 부쳐두었던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일들이 後日 結果가 나타나면 누가 그러한 諮問을 했느냐 등 아우성이고 協會內나 建築界에 內紛같은 또는 龜裂이 일어나게했다.

이런 일은 惡意로 解釈하면 自己만이 第1이라는 生覺이겠고, 또는 依賴側이 故意로 離間策으로 라고도 볼수 있겠다. (過去 多分히 그런 氣味가 있었다)

위와같은 生覺이 들어 即刻 家協制作分委와 士協理事會에 事由를 連絡해서 建築界의 全般的인 意見이나 見解를 綜合해 갖이고서 參席하기로하고 兩協會에 直接 參席

해서 聽取하고 參席했다.

무릇 著作權이란 創作에 對한 것이지만 作家의 人格權까지도 包含되어 있기에 팔고 싶지도 팔수 없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것인데 大概의 境遇 著作權은 讓渡나 購入이나 販賣가 可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1회限의 使用權은 讓渡賣買하는 것을 마치 著作權을 賣買하는 것으로 錯覺하고 있는것만 같다.

著作權은 作家에 嚴然히 歸屬되는 것이고 一般은 그 回数가 制限된 使用權 뿐인 것이다.

現行 法令엔 効用 時限을 作家(著作權者) 死後 10年이다. 20年이다 라고 되어 있다.

勿論 改正案에는 이 年限이 延長될 것을 建議하고 있다. 이 會合에서 論議된 많은 討論中에서 建築에 關係되는 建議事項만을 간추려 보면,

1. 「建築家의 著作權 効用 期間은 永遠이다.

他部問에서는 作家死後 婦·長子로 繼承되어 50年이다. 100年이다 라고 되지만 建築에서는 複与가 없기 때문에 또 歷史의으로도 그 作品이 消滅될때까지 永遠으로 해야 한다고 例를들어 몇 1000年의 作品이 남아 있어서 証明해 주고 있다. 그것을 模倣이나 표절했을 境遇는 罰則을 받는다는 것이다. 模

2. 「懸賞設計에서 當選作의 著作權의 確保

이것은 過去만은 發注側의 獨善으로 當選作의 著作權은 發注者에 屬한다. 또는 応募作品은 一切反還 않는다. 等等의 事例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3. 「建築設計者 選定은 建築主의 自由이지만 創作 隨意 契約으로 해야한다.

지금까지는 監査等の 問題로서 技術用役契約이나 納品 契約 따위로 하고 있고, 去今 經濟企劃院의 設計入札에 對한 有權의 解釋의 結果도 隨意는 認定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獨善의이고 無知한 發注側은 入札을 (形式的이라도) 要求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것은 監査를 爲 主로 하는 無能한 發注者들)

4. 專問家로 構成될 議機構가 必要하다

표절이니 模倣이니 近似, 類似, 轉移等 問題에서 訴請이 있을때 司法官이나 他部問 人士들은 그 審議가 不可能하므로 建築家들로 構成된 審議機構가 있어 判斷이 내려지면 그 結果로서 司法權을 行使하면 되기 때문이다.

5. 余他法과의 關係

제 아무리 著作權法 이 잘 改正되었다 해도 會計法에 創作 隨意法이 없으면 契約過程에서 行政的으로 混亂이 일어나고 士法에서 資格이 定해진 것이 無視되거나 해서 는 안 되겠고 特히 稅法에서 서비스業으로 되어 있으면 稅額의 附加率이나 創作이라는 점이 模糊해지기 때문이고 國際著作權法과도 步調를 맞추지 않으면 國際交流나 國際競爭 進出等에 混亂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以上 5 個項에 對해서 例를 들면서 強硬하게 主張을 했고 余部問의 우리가 이때까지 生覺조차 못했던 特殊한 例나 意見들은 많은 參考가 되었고 工夫도 되었다.

何如間 이 法 序頭에 “創作物의 著作權은 作家 에게 있다.” 라는 主條文 하나라도 모든 問題가 다 危舍되어 있지만 우리는 立法의 趣旨나 精神과 違背되는 施行令이나 細則, 條例, 指示 命令이 얼마나 많은가를 잘 알고 있는 터이라, 또는 詔問委員들의 發言이 얼마나 法 改正에 反映될 것인가에 對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建築界의 全般的인 意見이나 見解, 要求를 強力히 發言 했을 뿐이다.

此後 繼續이 著作權法 改正에 關한 問題는 討論되고 더욱 具體的으로 進展될 줄 안다.

文公當局도 銳意, 그 方向으로 가고 있는 것이 었보이고 芸總이나 芸術振興院 等 이에 關係되는 機關이나 團體가 至大한 關心을 가지고 臨하고 있는것도 事實이다.

우리는 現行(現在 未改正) 法에도 著作權 對象 種目中에 嚴然히 建築이 들어 있음에도 不拘하고 余他法의 強勢에 우리들의 著作權이 保護되지 못하고 있다는 點을 生覺할 때 우리의 가장 重要한 權益을 지키기 爲해 더욱 關心과 研究와 連帶意識을 가진 努力이 要請 되는 것이다.

끝으로 著作權法 研究所의 理事陣과 諮問陣을 보면 아래와 같다.

理事陣

白鉄(理事長) 韓勝憲(所長) 文仁龜, 李恒寧(弘大總長)
李奉來(芸總會長) 張仁淑(靑瓦台秘書) 趙演鉉(文人)
崔昌奉(文芸振興院)

諮問委員

李崇寧(學術) 李御寧(文學) 韓萬年(出版)
琴수현(音樂) 조춘영(音樂) 邊鍾夏(美術)
車凡錫(演劇) 郭福錄(翻譯) 李真奘(放送)
황영민(映畵) 이영희(新聞) 金思達(書芸)
崔昌奎(建築) 李健中(寫眞) 민영빈(國際)